

#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최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·금융·주거지원 상담, 긴급임시주거 지원 및 이주비,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응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.
- 이에 더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이를 위해 시장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

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